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발행교재 인쇄제작업체 선정」

#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EBS

2023. 8.

한국교육방송공사

# I . 입찰유의서

---

## 1. 입찰명 : (재공고)2024~2025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별행교재 인쇄제작 업체 선정

### 2. 목적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이라 한다)가 행하는 인쇄제작 대행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입찰 품목은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교재로 제작기간 준수, 제작물의 질적 보장, 파본교재의 신속 처리, 제작물의 신속한 납품 등 교재 제작의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입찰접수 시 개별로 진행하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입찰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

### 3. 계약의 종류 및 계약기간

- 계약의 종류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 ‘단독계약’ 참여 요건(시설 및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 \* 공동계약(컨소시엄) 시 컨소시엄 최대 2개업체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표자 1인을 결정하여 입찰참여 및 계약을 진행. 입찰·낙찰·계약·과업수행·과업관리·대금확인·대금지급 및 정산 등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음.
  -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중복참여 불가
- 계약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 \* 계약기간 중 계약비율 변경 관련 사항 등은 “계약서 4조(계약비율)” 확인

### 4.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5. 입찰품목

### ○ 4\*6 윤전 인쇄

입 찰 품 목		대 상	
		교과	“수능특강”
①품목	국어1+사회1	국어 (한문, 논술 교재 포함)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사회	‘한국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②품목	영어+사회2	영어(제2외국어 포함)	전과목
		사회(수능특강 일부)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정치와 법’
③품목	수학	수학	전과목
④품목	과학+국어2	과학(종합, 기타)	전과목
		국어(수능특강 일부)	‘독서’
		교재세트작업 및 부가인쇄물 포함	

- \* 1. 교과 구분은 “EBS”가 직영 출판으로 발행하는 초·중·고 대상 학습 교재로 하며, ‘기타대상 교재’는 유아·성인대상 교재, ‘종합서’는 교과구분이 없거나 교과 통합형태로 발행하는 교재임
  - 2. ‘세트작업 및 부가 인쇄물’은 각 교과를 취합하여 제작하는 세트물(초등 등)의 부가적인 인쇄물(스티커, 부록 등)과 이에 수반 되는 작업(취합, 투봉, 세트 완제품 납품 등)임. 이와 관련하여 취합작업 및 취합작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작업 및 보관공간(자체보관 또는 외부물류업체 등)을 확보하여 세트용교재 및 부속물에 대한 입고가 진행되는 경우 즉시 수용하여야 함
  - 3. 교재개발(재활용 포함) 과정 중 신규교재가 개발되거나 기존 교재가 폐간될 수 있음
  - 4. 계약연장 시 “주요제작교재”(전년도 기준 해당 시리즈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해당 인쇄소의 EBS교재 연간매출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판형이 변경(“46 윤전→국윤전” 또는 “국윤전→46윤전”)될 시, 해당교재에 대한 계약유지 및 변경 여부는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 “주요제작교재”的 경우 해당교재가 포함된 품목을 낙찰받은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판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품목 인쇄제작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교재에 적용되는 계약비율은 기존 계약비율이 아닌 ‘변경 후 기준’ 대상 교재를 제작하는 인쇄업체 계약비율 적용
- ex) ‘①품목’ ‘국어교재’ 중 ‘주요제작교재’의 판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교재 제작 시 해당품목을 제작하는 인쇄업체가 적용받는 계약비율을 적용한다.

## 6.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나 기타 처분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아래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찰 등록마감 일시 까지 참가 신청을 하고, EBS로부터 입찰 참가 승낙(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합격 후)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인·허가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및 동 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 각 호(부정당업체제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등록된 종업원 수가 다음 기준 이상인 자

1. 등록된 종업원 수가 25인 이상인 자

2.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2개의 업체로 구성하되, 종업원 수는 각 업체 별 최소 10인이상, 컨소시엄 전체 25인 이상인 자

※ 단독참여요건(시설 및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 입찰 제출서류(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통해 종업원 수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중 최소 종업원 수가 기준인원 이상이어야 함

다. 다음 시설을 소유(리스 포함, 임차 제외) 및 설치하여 운영(가동) 중인 자

### 소유 시설

- 4/4도 이상 옵셋 4\*6 윤전 인쇄기 1대 이상

- 4/4도 이상 옵셋 매엽 인쇄기 1대 이상

- 30콤마 이상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정합, 무선, 삼방재단) 1대 이상

- 소유 시설은 입찰 공고일 기준 4개월 이전까지 구매(국세청 신고 포함) 완료 또는 리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리스업체)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시설에 한함
- 소유(리스포함) 시설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제작(생산)된 기기로 입찰참여자(동일인)의 동 일 장소(공장등록증 주소지)내에 설치 및 운영(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가동) 중 이어야 함

라. 위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서류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 7. 입찰 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정시간 내 제출처 도착 분 까지 인정 마감시간 암수

- 제출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또는 등기제출 등 불가
- 제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기획부(15층) ※ 신청 후 '신청확인서' 반드시 수령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EBS" 소정 양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및 구청발행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각 1부
  - 다. 건물(사무실 및 공장)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라.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공장에 대한 "나"호 및 "다"호 서류 각 1부
  - 마.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 등본)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바. 전 직원 의료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간 가입자 명부)
  - 사.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1부
  - 아. 업무전담 예정자 및 감리전담 예정자 재직증명서(이력서 포함)
  - 자. 입찰참가자격의 소유시설에 대한 내역서("EBS" 소정 양식)와 소유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수입원장, 세금계산서(기 신고 완료 분), 거래명세서, 리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사본
  - 차. 청렴이행각서("EBS" 소정 양식)
  - 카. 사무실 및 공장 약도(연락처 포함)
  - 타.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시험성적서(종이, 잉크, 풀, 코팅제)
  - 파. 컨소시엄업체 권리·책임 확인서("EBS" 소정 양식, 컨소시엄 참가자 限)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나~바', '자~타'에 해당하는 서류는 각 업체 별로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는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준비하여 대표업체가 취합 제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컨소시엄 대표 명의로 발행
    -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단, 사본 제외) 이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상기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원본 1부, 복사본 1부 및 PDF(또는 스캔)파일로 제출서류 일체가 수록된 USB 1개 제출
    - ※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 ※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시험성적서는 계약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기존 공고(공고번호 2679호) 시 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신청서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추가제출 불필요)

※ 기존 공고(공고번호 2679호)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는 주계약내용(입찰제출마감일자, 입찰일 등)을 변경하여 제출한다.(보증기간 입찰일 기준 보증기간 30일 이상)

## 8. 현장실사

- 입찰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중 낙찰자에 대하여 “EBS”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 별도로 실시한다.
- 제출 서류의 허위(시설의 미비 또는 서류상 내용과 불일치 등)가 발견되는 업체는 낙찰이 취소되며, 기존 입찰 참여 진행사항 일체가 취소될 수 있다.
- 현장실사는 “EBS”가 실시하며, 입찰 참여자는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 참가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기존 공고(공고번호 2679호) 의 입찰에 참여하여 현장실사에 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실사는 시행하지 않으며 기존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 9.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등록) 시 347,000,000원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 기간 공고문에 기재 된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확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전액 EBS에 귀속한다.
  1. 최종 낙찰자가 지정 기일 내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담합입찰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 입찰 참가를 방해한 경우
  3.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10. 입찰방법 및 순서

- 입찰은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
- 입찰 장소 입장 및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인 또는 위임대리인(위임장제출필) 만이 가능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입찰진행 시 핸드폰을 포함하여 유무선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 입찰은 다음의 입찰품목 순서별로 1개씩 실시한다.

입찰 품 목		대상	
		교과	“수능특강”
①품목	국어1+사회1	국어(한문, 논술 교재 포함)	‘문학’, ‘회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사회	“한국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②품목	영어+사회2	영어(제2외국어 포함) 사회(수능특강 일부)	전과목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정치와 법’
③품목	수학	수학	전과목
④품목	과학+국어2	과학(종합, 기타)	전과목
		국어(수능특강 일부)	‘독서’
		교재세트작업 및 부기인쇄물 포함	

- 낙찰자 선언은 모든 품목의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품목별로 최종 낙찰선언 및 낙찰비율을 공개하고, 입찰과정 중에는 해당품목의 낙찰자명만을 공개한다.
- 입찰 순서에 따라 입찰 진행시 유찰 품목이 발생할 경우 동일 장소에서 추가 입찰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하며, 동 품목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에 그 다음 입찰 순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입찰을 실시한다.
- 입찰 순서에 의한 낙찰자는 별도의 낙찰자 좌석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동 품목 응찰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누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 품목의 낙찰을 취소하고 모든 입찰에 참여를 제한한다.

## 11. 입찰서 작성

- 입찰서는 입찰 당일 배부하는 입찰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로서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첨부 참조)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계약)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에 말소 또는 정정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찰 비율은 말소 또는 정정할 수 없다.
- 입찰서의 응찰 비율(%)은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한다.[(예) 98.76%]

## 12.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밀봉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1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방법은 공고로서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 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비율이 “EBS” 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 비율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비율 응찰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 ×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용지품질검사를 위한 본문용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생산 즉시 A4크기 30매 이상을 골판지를 이용, 구겨지지 않게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3부 제출(용지 생산자 발행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 자료 첨부)
- 낙찰자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응찰비율이 “EBS” 예정비율 이하인 응찰한 자 중 차순위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14.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8.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및 위·변조하였을 경우
9. 기타 “EBS”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8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입찰

## 15. 계약체결

-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낙찰 취소된 품목은 재 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를 제외하고 “EBS” 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비율 응찰자 순으로 수의계약(계약해지 품목의 계약비율 기준)을 통하여 해당 품목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6.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계약품목별로 694,000,000원을 계약체결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 및 공공기관에 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또는 교과서)을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상기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기 계약보증금은 “EBS”에게 귀속 한다.

## 17. 입찰 및 계약의 성립

- 본 입찰은 경쟁 입찰로서 모든 품목별로 복수의 입찰참여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 계약은 공사와 계약대상자(최종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품목은 “EBS”가 필 요시 별도의 업체선정 절차 없이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를 제외하고 “EBS”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비율 응찰자 순으로 수의계약(계약해지 품목의 계약비율 기 준)을 통하여 해당 품목 계약자로 선정하거나, 동 입찰로 계약된 타 품목 계약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수 있다.

## 18. 관계사항의 숙지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 내용, 입찰 유의서, 계약조건, 제작 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중요한 사항 은 반드시 “EBS”로 문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 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절차’,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과업수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등 일체의 관련 업무는 컨소시엄 대표를 통해 진행되며, 본 입찰 및 입찰에 따른 계약과 관련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음.

## 19. 안내 및 문의

- 주 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학교교육본부 교재기획부
- 담 당 : 최봉균
- 사업관련 및 계약관련 문의
  - TEL : 02-526-2412, e-mail : bgchoi@ebs.co.kr

## II. 계약조건

### 계약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와 \_\_\_\_\_(이하 “인쇄협력사”라 한다)는  
『2024~2025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4\*6윤전 품목\_\_\_\_\_인쇄(제작) 계약』을 다음과 같  
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EBS”와 “인쇄협력사”가 EBS 직영교재 발행·보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계약종료 전  
양당사자의 계약연장 의사 및 계약비율 조정 합의여부 등을 반영하여 최대 1년 범위 내  
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계약기간 포함 최대 3년)  
② 계약연장여부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합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없이 해당  
일자가 도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인쇄협력사”는 별첨 「2024~2025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공통  
사양서」에 따른 교재 제작(인쇄)을 위해 “EBS”的 편집 대행사와의 필름 또는 데이터  
파일 인수, 교재 제작(인쇄 및 제본 등), 포장,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2024~2025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란 “EBS”가 각 연도별 교재개발계획에 의거 초  
등, 중학, 고교(연계 및 비연계) 및 단행본 등 발행 대상 교재로 결정한 교재를 말한다.

**제4조(계약비율)** ① 계약비율은 “EBS”가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  
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인쇄비 지급 시 적용하는 비율로서  
\_\_\_\_\_%로 정한다.  
② 용지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은 제 8조에 정한 ‘대금산출 방식’에서 지대  
가격을 빌주 당월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만약 물가자  
료에 없는 지대의 경우 당월 ‘페이퍼 프라이스’ 홈페이지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③ 2024.10월(최초계약 1년 후)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계약비율은 <“최초 계약비율” × “통계청(KOSIS)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총지수”의 상승률>의 방식을 산출한다.

\* 상승률 = (당해년도 9월 지수 - 전년도 9월 지수) ÷ 전년도 9월 지수

\* 조정 시기에 전년도 9월 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각 년도 8월 지수 활용 가능

\* 변경된 계약비율은 <2025년도 EBS 교재개발계획>에 따라 제작되는 교재에 적용

④ 위 ③항의 계약비율 조정방법은 최초 2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되는 1년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연장 시의 계약비율은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인쇄협력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_\_\_\_\_ 원을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쇄협력사"가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EBS"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별로 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은 "EBS"에 전액 귀속되고, 이 외 별도로 "EBS"는 "인쇄협력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 완료한 후 "인쇄협력사"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제6조(제작사양)** ① "EBS"의 교재 개발 계획에 의거 전년도 기준의 교재가 폐간되거나, 신규 교재가 발행 될 수 있으며, 교재개발 및 발행과정 중 사양(규격, 색도, 면수, 지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교과별 교재 발행 책 수, 부수, 교재 규격, 예상면수 등은 교재개발 과정 및 판매 추이에 따른 변동이 많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사전 제공하지 않으며, 공통 사양서 만을 제공한다.

③ "인쇄협력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 및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하며, 이에 대하여 "EBS"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본문용지)** ① "인쇄협력사"가 사용하여야 할 본문 용지(원지)는 별첨 「2024~2025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공통사양서」에서 정한 품질(사양) 검사 후 EBS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EBS"의 요청 시 "인쇄협력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본문 용지(원지)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협력사"는 교재 제작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합격된 용지(원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EB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용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EBS”에 통보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EBS”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문용지의 품질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대금산출방식)** ① 제작대금 산출방식은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별첨 「2024~2025년도 대금산출 및 후가공 기준표」와 발주 당 월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서울기준 지대(종이)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계약비율을 승하여 산출(부가가치세 포함)한다. 만약 물가자료에 없는 지대의 경우 당월 ‘페이퍼 프라이스’ 홈페이지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발주부수를 기준으로 3,000부 이상은 윤전인쇄 단가[표지, 간지(속표지 포함) 및 별지 등은 매엽 인쇄 단가 적용]로, 그 미만은 매엽인쇄 단가를 대금 산출에 적용한다.

② 교재별 판매추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윤전인쇄에서 3,000부 이상 5,000부 미만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본문(해설포함) 인쇄비에 30%를 가산한다.

**제9조(인쇄대금의 지급)** "인쇄협력사"는 매 발주건(교재)별로 "EBS"의 발주서에 의한 인쇄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후 "대금산출 청구(계산)서"와 함께 납품부수에 대한 입고 확인 내역[EBS 물류대행사 날인 포함 및 입고증 사본(EBS 물류대행사 확인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인쇄협력사"의 계산서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EBS"가 지급한다. 다만, "EBS"의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인쇄협력사"와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인쇄대금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 체결 후 인쇄대금 지급에 하자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내·외부감사의 지적사항 등으로 인쇄대금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인쇄협력사"는 언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EBS"는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EBS"는 계약 종결 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쇄협력사"에게 지급할 지급금이나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인쇄협력사"가 "EBS"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쇄협력사"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인쇄협력사”가 납품기한 내에 교재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인쇄대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가 “인쇄협력사”에 지급할 대가(인쇄대금) 등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EBS”가 발주한 수량 중 “인쇄협력사”가 미 납품한 수량(금액)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
2. 납품 이후 유통과정에서 “인쇄협력사”的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본(제본 및 인쇄 불량 등 포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지체일수는 정상교재로 대체 납품이 완료된 시점)

③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납품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상기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정상교재로 대체 납품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인쇄협력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EBS”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EBS”는 “인쇄협력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인쇄협력사”는 “EBS”的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BS”는 “인쇄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EBS”에 귀속되고, “인쇄협력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EBS”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인쇄협력사”가 납품기한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2. "인쇄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별첨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업무진행 차질 및 교재 품질(파본 포함)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4.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출한 용지가 "EBS"가 지정한 품질에 미달될 경우
5. 나머지 기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제작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 중 신규로 수립되는 "EBS 교재개발계획"에 따라 제작교재의 판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요제작교재"(인쇄소별 전년도 EBS교재인쇄매출의 20%이상 차지하는 시리즈)의 판형변경 ("46배판→국배판" 또는 "국배판→46배판")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해당 "인쇄협력사"가 희망할 때에는 (변경 전 판형기준)해당 품목을 낙찰받은 "인쇄협력사"가 계속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작교재"의 판형변경을 사유로 계약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위약금 및 제재조치 없이 해당품목 전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교재 이외의 인쇄계약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주요제작교재"의 판형변경에도 "인쇄협력사"가 해당교재의 계속 제작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교재 제작에 적용되는 계약비율은 "변경 후 판형"을 기준으로 해당품목을 제작하는 인쇄업체가 적용받는 계약비율을 적용한다.

**제16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EBS"와 "인쇄협력사" 쌍방 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8조(기타)** ① 별첨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계약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EBS"와 "인쇄협력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 ④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⑤ “인쇄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과업수행’ 및 ‘과업관리’, ‘대금정산’ 등을 비롯하여 일체업무는 컨소시엄 대표를 통해 진행하며 본 계약 관련 ‘해당 컨소시엄’의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EBS”와 “인쇄협력사”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인쇄협력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 유 열                  (인)